

[X]. 제7장(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7-나장
투자

제1절
적용범위 및 정의

제7나.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다. 제7나.14조부터 제7나.16조까지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이 장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그 당사국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공기업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을 포함한 인이 그 당사국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¹, 그러한 인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 권한은 입법적 부여 또는 정부 권한의 행사를 이전하거나 승인하는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법에 따라 위임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

4. 투자의 설립, 인수 또는 확장에 대하여 제7나.4조부터 제7나.6조까지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나.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이란 상업적 근거에서 행해지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경제운영자와의 경쟁하에 행해지지도 않는 활동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영국 국왕의 정부

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그 투자자가 한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은 그 다른 쪽 당사국을 상대로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와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으로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²

기존의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² 기업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그 당사국 내 기업의 관련 상황에 대한 사안별 종합 검토에 따라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³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과 당사국 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⁴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다만, 투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어느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⁵,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

³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⁴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한도에서, 양여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수단 중에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그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저해하지 않는다.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의 투자자”의 정의의 목적상, 투자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원 또는 자본을 이전하거나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투자를 “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로 양해한다.

자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자국 법에 따른 한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자국 법과 규정에 따른 영국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정부 기밀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는 웨일스

피청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7나.3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해야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 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7-라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

투자 자유화 및 보호

제7나.4조

시장접근

1. 영국은 기업 형태의 적용대상투자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⁶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⁷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특정 경제활동을 행할 수 있는 기업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영업의 총수 또는 총산출량,⁸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기업이 고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나.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자 또는 그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수행되도록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2. 기업 형태의 적용대상투자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한국의 의무 및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7 나-마 및 부록 7 나-마.1 에 의하여 규율된다.⁹

⁶ 이 조의 목적상, “기업 형태의 적용대상투자” 라는 용어는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한도에서, 적용대상투자를 통한 영국 영역 내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⁸ 가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은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⁹ 제2항은 적용대상투자를 통한 한국 영역 내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적용대상투자를 통한 한국 영역 내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제7가.1조(적용범위) 제2항가목에 따라 제7가.5조(시장접근)의 규율을 받는다.

제7나.5조
내국민 대우¹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제7나.6조
최혜국 대우^{11,12}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나.5조 또는 제7나.6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부여되는 대우인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을 구별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는 제3절에 포함된 것과 같은 국제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¹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체결한 다른 국제 협정의 실체적 규정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 조에 언급된 "대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조치는 그 대우를 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조의 위반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7나.7조 대우의 최소기준¹³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 원칙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투자자의 기대와 불합치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 결과로 적용대상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가 있더라도 이 조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를 지급, 갱신 또는 유지하지 않았거나 변경 또는 삭감했다는 단순한 사실은 그 결과로 적용대상투자에 손실 또는

¹³ 제7나.7조는 부속서 7나-가에 따라 해석된다.

손해가 있더라도 이 조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7나.8조

무력충돌 또는 내란 시의 대우

1. 제7나.12조제6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 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3. 제1항은 제7나.12조제6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7나.5조에 불합치했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7나.9조

수용 및 보상¹⁴

¹⁴ 제7나.9조는 부속서 7나-나에 따라 해석된다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지 않는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않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지불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않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
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0장(지식재산) 및 무역관련 지식
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합치하는 범위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¹⁵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를 지급, 갱신 또는 유지하지 않거
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를 변경 또는 삭감하는 당사국의 결정은

가.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지급, 갱신 또는 유지에 대한 법 또는 계약
상 구체적 약속의 부재 시, 또는

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지급, 갱신, 변경, 삭감 및 유지에 부가되는
조건에 따른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제7나.10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없
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¹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의 “취소”라는 용어가 그러한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포함하며, 지식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용어가 그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하여 근로하는 외국 인력의 소득 및 그 밖의 보수

바. 제7나.8조 및 제7나.9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사.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적용대상투자로부터 발생한, 또는 그 투자에 기인한 소득, 수익, 이윤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송금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투자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¹⁶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¹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의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다. 형사범죄
-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7나.11조

대위변제

한쪽 당사국 또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기구, 법정기관 또는 회사가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적용대상투자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국은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그 적용대상투자자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소유했을 모든 권리의 대위변제 또는 이전을 인정하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배제된다.

제7나.12조

비합치 조치

1 제7나.4조제1항, 제7나.5조 및 제7나.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당사국, 또는 제7나.4조제1항의 경우 영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¹⁷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7나.4조제1항, 제7나.5조 또는 제7나.6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했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7나.4조제1항, 제7나.5조 및 제7나.6조는 당사국, 또는 제7나.4조제1항의 경우 영국에 의하여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의정서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제7나.5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해당하거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5. 제7나.6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해당하거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제7나.4조제1항, 제7나.5조 및 제7나.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¹⁷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제7나.4조제1항의 경우 영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7나.13조

혜택의 부인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7나.14조

규제조치

1. 이 장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국의 규제 권리를 재확인한다.¹⁸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자국 법의 수정을 포함하여, 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이 장에 따른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¹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또한 제재의 부과에 관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을 포함한다. 관련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거나 대체된 대로의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제재의 부과를 규율하는 법과 그 하위 규정, 그리고
- 나. 영국의 경우, 개정되거나 승계하는 법과 규정을 포함한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과 그 하위 규정 및 제15.15조(영역적 적용)에 열거된 영국이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에 또는 그 영역 내에 적용되는 그와 동등한 법 또는 규정

제7나.15조

투자 및 환경

1. 양 당사국은 투자가 환경에 민감한 방식으로 설립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투자 및 투자 관행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 우선순위 및 환경보호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장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이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4. 양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명문화된 환경보호의 기준을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제7나.16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또는 자국의 관할권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그 당사국이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지침 및 원칙을 그들의 내부정책에 자발적으로 통합하도록 각 당사국이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제7나.17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7나.5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

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제7나.5조 및 제7나.6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그러한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나.18조

안보 예외

1. 제7나.3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제7나.19조

일반적 예외

1. 제7나.3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투자자 또는 투자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¹⁹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 라.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 또는 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의 보호, 또는
 - 3) 안전, 또는
- 마.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양해한다.

- 가. 제1항나호에 언급된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나. 제1항마호에 언급된 조치는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

¹⁹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제3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²⁰

제7나.20조
협의 및 교섭

1.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국에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조치들에 대한 사실의 간략한 기술을 명시한 서면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 및 교섭의 개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나.21조
중재 청구 제기

1. 제14장(분쟁해결)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투자분쟁이 제7나.20조에 따른 협의의 서면 요청을 피청구국이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했다는 것

²⁰ 제3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부속서 7나-다에 따른다.

(가) 청구인의 적용대상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제7나.5조, 제7나.6조 또는 제7나.10조에 따른 의무, 또는

(나) 제7나.4조를 제외하고, 제2절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의무,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했다는 것

(가) 청구인의 적용대상투자의 경영, 영업, 운영,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제7나.5조, 제7나.6조 또는 제7나.10조에 따른 의무, 또는

(나) 제7나.4조를 제외하고, 제2절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의무,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 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인은 다음 대안 중 하나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중재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 규칙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 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7나.22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분쟁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7나.23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7나.21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7나.21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7나.21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했거나 최초로 인지했어야 할 날부터 3년 6개월을 초과하여 경과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되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제7나.21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1) 제7나.21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 그리고

2) 제7나.21조제1항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기업의 서면 포기서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7나.21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7나.21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4. 제7나.21조에 따른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동일한 조치 또는 조치들과

관련되고 동일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가 다음에 의하여 피청구국과 비당사국간의 협정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계속된 경우 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비당사국의 인, 또는

나. 청구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비당사국의 인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국이 그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구인과 비당사국의 인이 그 각 협정에 따른 청구를 이 절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병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나.24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 후 90일의 기간 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중재규칙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7나.2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중재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7나.21조제1항나호에 언급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중재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5. 이 절에 따라 제기된 청구를 위한 중재판정부에 임명된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 투자 또는 국제 무역 규칙, 또는 국제 투자 또는 국제 무역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나. 독립적이며, 어떠한 정부와의 제휴 관계도 없고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다. 국제중재에서의 이해충돌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지침과 같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충돌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지침을 준수한다. 그리고

라. 절차 기간 동안 이 절에 따라 계류 중이거나 새로운 어떠한 중재에서도 변호인으로서 또는 당사자가 임명한 전문가 또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제7나.25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7나.21조제3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자들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 범위 내의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문제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아니나 중재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인 또는 실체로부터 외부 조언자 서면입장을 수용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각 서면입장은 저자를 기재하고,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후관계를 공개하며, 서면입장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인, 정부 또는 그 밖의 실체를 기재한다. 각 서면입장은 중재 언어로 작성되고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분량 제한 및 기한을 준수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서면입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서면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중재절차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와 같은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7나.3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 또는 명백하게 법률상 이유가 없는 청구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제기된 청구가 제7나.3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 상의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의 관련 조항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신속절차 이용을 했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함한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45일 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를 포함하여,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투자자가 당사국이 제7나.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청구를 포함하여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투자자는 국제 중재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합치되게, 자신의 청구의 모든 요소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8. 피청구국은, 제7나.11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 반소, 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9.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7나.21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0.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배상 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제7나.26조

준거법

1. 제2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7나.21조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²¹

2. 제15.1조(무역위원회)제4항라호에 따른 이 협정의 규정 해석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²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피청구국의 국내법이 사실상의 문제로서 청구와 관련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제7나.27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²²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7나.25조제2항, 제7나.25조제3항 및 제7나.30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분쟁당사자가 보호정보로 지정되거나 달리 제3항을 조건으로 하는 정보를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며, 적절한 조치에는 그 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심리를 비공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3. 제4항라호를 포함하여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심리를 포함하여 중재절차 중 또는 중재절차 후에 보호정보를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달리 공개하거나, 제7나.18조 또는 제15.9조의2(정보의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²² 의사통보의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의사통보를 수령한 후 청구인이 중재통보를 제출하고 피청구국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 의사통보를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²³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보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다. 그리고

라. 중재판정부는 제3항에 따라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절하게 지정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 그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 또는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것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라호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라호2목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국은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²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청구국이 제7나.18조 또는 제15.9조의2(정보의 공개)에 따라 보류될 수 있는 정보를 중재판정부에 공개할 것을 선택한 때, 피청구국은 여전히 그 정보의 대중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공개로부터 민감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제7나.21조제3항다목에 따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청구가 제기된 경우,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의 투명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만을 따를 것이다.

제7나.28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무역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부터 90일 내에 제15.1조(무역위원회) 제4항라호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해석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무역위원회가 90일 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7나.29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 범위 내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보고하도록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7나.30조

병합

1. 제7나.21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의 기간 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명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명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피청구국 또는 어느 청구인의 당사국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날 후 60일의 기간 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7나.21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7나.24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임명된다
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7나.2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했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7나.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10.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7나.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7나.31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7나.21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인의 자격으로 입은 손실 또는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3. 가. 비용 및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그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배분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 간에 각각의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배분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인 판정 또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밖의 판정에서 비용 및 변호사 보수의 배분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한 분쟁당사자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지불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결정한다.

4. 제1항을 조건으로, 제7나.21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되고 기업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판정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그 판정이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5.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하지 않는다.

6.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7. 제8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8.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했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7나.21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했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했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9.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10.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14.6조(패널 잠정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11.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10항에 따라 취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제7나.32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7나-라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된다. 당사국은 그 부속서에 언급된 장소의 변동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4절
기존의 양자 간 투자조약의 종료

제7나.33조
기존의 양자 간 투자조약의 종료

1. 제2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1976년 3월 4일에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이라 한다) 및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권리 및 의무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효력이 중단됨에 동의한다.²⁴
2. 개정의정서의 발효일 전에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투자는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에 의하여 계속 규율된다. 투자자는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에 관하여, 그 조약에 규정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서만, 그리고 개정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제기된²⁵ 경우에만,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에 따른 중재에 그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²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 제11조에 따라 1976년 양자 간 투자조약의 적용지역이 확대된, 영국 정부가 그 국제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에 적용된다.

²⁵ 그러한 청구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요건의 목적상, “제기된”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조정요청 또는 중재요청이 제출된 날을 말한다.

부속서 7나-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7나.7조 및 부속서 7나-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7나.7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7나-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7나.9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물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7나.9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물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²⁶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정부행위의 성격

²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되는 한도에서의, 정부가 구속력이 있는 서면 보증을 투자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와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나 관련 분야에서 정부 규제의 가능성과 같은 요소에 달려있다.

나.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²⁷, 안전 및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²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호의 범위를 제한함 없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행위는 여러 행위 중에서 특히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 진단제, 백신, 의료기기,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기술, 보건관련 보조기구 및 기기, 그리고 혈액과 혈액관련제제의 규제, 가격설정과 공급 및 급여에 대한 그러한 조치를 포함한다.

부속서 7 나-다

투자심사

1. 개정되거나 승계하는 법 또는 규정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 21065 호, 2025. 10. 1.) 제 1 장, 제 2 장 및 제 8 장 또는 그 하위 규정, 개정되거나 승계하는 법 또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21065 호, 2025. 10. 1.) 제 3 장 및 제 6 장 또는 그 하위 규정, 또는 개정되거나 승계하는 법 또는 규정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21065 호, 2025. 10. 1.) 제 3 장 및 제 8 장 또는 그 하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결정 또는 요건은 투자심사와 관련되는 범위에서 제 3 절 또는 제 14 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개정되거나 승계하는 법 또는 규정을 포함한 「2021 년 국가안전 및 투자법」 또는 그 하위 규정에 따른 영국의 결정 또는 요건, 또는 개정되거나 승계하는 법 또는 규정을 포함한 「2002 년 기업법」 제 3 부 또는 그 하위 규정에 따른 공익에 근거한 영국의 결정 또는 요건은 제 3 절 또는 제 14 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2 년 기업법」 제 3 부에 따른 공익에 근거한 결정 또는 요건은 「2002 년 기업법」 제 3A 장에 따른 결정 또는 요건을 포함한다.

부속서 7나-라
제3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3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국

영국

제3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영국에 송달된다.

The Permanent Secretary's Office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Old Admiralty Building
London SW1A 2DY
United Kingdom

부속서 7 나-마^{1,2}

한국

비서비스 투자 분야의 시장접근

정의

1.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의 목적상,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이란 상업적 근거에서 행해지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경제운영자와의 경쟁하에 행해지지도 않는 활동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한국의 중앙정부를 말한다.

경제활동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 즉 상업적 근거에서 행해지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경제운영자와의 경쟁하에 행해지지도 않는 활동을 제외한 경제적 성격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설립이란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을 말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³,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¹ 제7나.1조 및 제7나.2조는 이 부속서 및 부록 7나-마.1에 적용되지 않는다.

² 이 부속서 및 부록 7나-마.1의 어떠한 규정도 제3절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을 따르지 않는다.

³ 법인의 "구성" 및 "인수"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투자자란 설립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수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⁴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 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영국의 법인이란 영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인으로서 영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⁵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한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자국 법에 따른 한국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자국 법과 규정에 따른 영국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

자연인이란 한국 또는 영국의 국민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⁴ 경제활동이 법인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지 않고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와 같이 다른 설립 형태를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법인을 포함한 투자자는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 및 부록 7나-마.1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우를 그러한 설립을 통하여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설립에도 부여되며, 그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 밖에 주재하는 투자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⁵ 기업이 영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영국 내 기업의 관련 상황에 대한 사안별 종합 검토에 따라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적용범위

2. 투자 환경, 그리고 특히 양 당사국 간 설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 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에서 설립에 영향을 주는 한국에 의한 조치에 적용된다.

가. 핵물질의 채굴, 제조 및 처리⁶, 그리고

나. 무기, 군수품 및 전쟁물자⁷의 생산 또는 거래

3.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 에 따른 한국의 의무는 다음에 적용된다.

가. 한국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공기업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인이 한국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⁸, 그러한 인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 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 은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증을 포함하여 한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처리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o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code 2330에 포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⁷ "전쟁물자"는 전쟁의 수행 또는 방위 활동과 관련하여 오로지 군사적 용도로 의도되고 제작된 제품에 한정된다.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 권한은 입법적 부여 또는 정부 권한의 행사를 이전하거나 승인하는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위임된다.

6.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 은 정부권한의 행사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 및 부록 7 나-마.1 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한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시장접근

8. 설립을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한국은 설립과 영국의 투자자에게 부록 7 나-마.1 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

9.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부록 7나-마.1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권리,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와 같은 그 밖의 설립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설립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영업의 총수 또는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⁹

라. 영국의 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⁹ 가호부터 다호까지는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마.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투자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의 수행에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약속 목록

10. 이 부속서에 따라 한국에 의하여 자유화된 분야와 유보에 의하여 해당 분야에서 설립과 영국의 투자자에게 적용 가능한 시장접근 제한은 부록 7 나-마.1 에 포함된 약속 목록에 규정되어 있다.

부록 7 나-마.1

한국

비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에 관한 구체적 약속

주해

1. 아래의 약속 목록(이하 “이 부록”이라 한다)은 부속서 7 나-마의 제 10 항에 따라 자유화된 경제활동과, 유보에 의하여 그러한 활동에서 영국의 설립과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제한을 표시한다. 이 부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가. 한국에 의하여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열, 그리고
 - 나.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부속서 7 나-마의 제 8 항 및 제 9 항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2.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부록에서 언급되지 않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설립은 약속되지 않는다.
3.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 목록의 이미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 부록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부속서 7 나-마의 제 8 항 및 제 9 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종류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한국에 의하여 유지 또는 채택되기 위하여 이 부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5.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 시, **ISIC 개정판 3.1** 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 년 발간 ISIC 개정판 3.1 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6.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부속서 7 나-마의 제 8 항 및 제 9 항의 의미 내의 시장접근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부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요구,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요구,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 및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정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는 비록 열거되지 않더라도, 영국의 설립과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7. 이 부록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한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7 다-가(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에 규정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이 부록에 포함된 모든 분야	<u>토지 취득</u>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 취득이 계속 허용됨.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 법인의 지점인 경우.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a) 정상적인 사업 활동 (b) 고위경영진의 주거, 또는 (c)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의 충족 외국인에 의한 농지 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u>투자</u>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1,2}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장관령에 따라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비율과 같은 문제의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허용됨. 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신규 발행된 공모주 외에 방위산업의 공모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¹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² 이 유보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다른 공기업 또는 정부 당국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u>취약 집단</u>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³
이 부록에 포함된 모든 분야	<u>국가 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u>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 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 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유보는 금융 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음.
	<u>총포, 도검, 화약류 등</u>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u>원자력 에너지</u> 원자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u>전력산업</u>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그러한 조치는 D(a)a (ISIC 개정판 3.1: 401)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전력 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

³ 취약 집단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u>가스산업</u> 천연가스의 수입 및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 그러한 조치는 D(a)b) (ISIC 개정판 3.1: 402)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가스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 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a) <u>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u>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5)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하여 약속 안함.
(b) <u>임업 및 벌목업</u> (ISIC 개정판 3.1: 02)	제한 없음.
B. 광업 및 채석업	
(a) <u>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u> (ISIC 개정판 3.1: 10)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b) <u>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탐사를 제외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수반된 서비스 활동</u> (ISIC 개정판 3.1: 11)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 없음: (a) 해저석유⁴ 채취권은 정부만 보유할 수 있음. 그리고 (b) 이러한 권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 면허업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은 비차별 및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d) <u>금속 광업</u> (ISIC 개정판 3.1: 13)	제한 없음.
(e) <u>기타 광업 및 채석업</u> (ISIC 개정판 3.1: 14)	제한 없음.
C. 제조업	
(a) <u>음식료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5 곡물도정 제외)	제한 없음.
(b) <u>담배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6)	제한 없음.
(c) <u>직물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7)	제한 없음.

⁴ “석유”는 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d) <u>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u> (ISIC 개정판 3.1: 18)	제한 없음.
(e) <u>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 핸드백, 안장 ·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19)	제한 없음.
(f) <u>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품 및 조물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0)	제한 없음.
(g) <u>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1)	제한 없음.
(h) <u>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u>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 제외)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i) <u>코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31)	제한 없음.
(j) <u>석유 정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32)	제한 없음.
(l) <u>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u> a) 기초 화학물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1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업 제외) b)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2) c) 합성섬유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m) <u>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5)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n) <u>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6)	제한 없음.
(o) <u>제1차 금속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7)	제한 없음.
(p) <u>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28 원자로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q) <u>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u> a) 일반목적의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 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9) c)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r) <u>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0)	제한 없음.
(s) <u>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1)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t) <u>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 · 기기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2)	제한 없음.
(u) <u>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3,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v) <u>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4)	제한 없음.
(w) <u>기타 (비군사용) 운송 장비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제외)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x) <u>가구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u> (ISIC 개정판 3.1: 36)	제한 없음.
(y) <u>재활용</u> (ISIC 개정판 3.1: 37)	제한 없음.
D.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a) <u>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 공급</u> a)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 (ISIC 개정판 3.1: 401)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 소유 지분 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한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b) 가스 제조, 가스배관을 통한 가스연료 공급 (ISIC 개정판 3.1: 402)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증기 및 온수 공급 (ISIC 개정판 3.1: 403)	제한 없음.